# 「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」 및 「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」 접수 안내

< 관세청, '20. 5. 18. >

관세청은 **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**과 **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**에 대해 **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**하는 제도 시행을 위해 **'20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**까지 19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.

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'1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

금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예 대상을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기업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.

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**'20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(홈페이지)**에서 **「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」** 또는 **「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」**를 **제출**하거나 **우편** 또는 **방문 신청**하시면 됩니다.

· 누리집 신청 : www.customs.go.kr에서 국민참여→참여광장→관세조사 유예
· 우편·방문 신청 : (35208)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

※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은 붙임 1, 2 참고

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고, 고용진행상황이 매우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할 예정입니다.

☞ 자세한 사항은 **관세청 법인심사과(담당 홍석환, ☎ 042-481-7973)**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[붙임 1]**

##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요건 및 신청방법

□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

○ 2019년도 수입(輸入)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* 중소 수출입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*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,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

- ▸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전년 동기(1～4월) 대비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20% 이상 감소한 경우
- 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

□ 제출서류

①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(예시 첨부)

②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③ 수출실적증명서 등 수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UNI-PASS 확인 가능)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세무대리인 확인본)

(첨부)

#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

## 1. 기본사항

| 회사명 | (주)한국 | 대표자 | 한국인 |
|---|---|---|---|
| 소재지 |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○번지 | | |
| 사업자등록번호 | 123-81-45678 | 업 종/업 태 | 제조 / 음료 |
| 대표 전화번호 | 02-123-4567 | 담당자 전화번호 | 02-123-4568 |

## 2. 중소기업 확인

| 구분 | 해당 여부 | 입증서류 |
|---|---|---|
|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| 해당 | ※ 중소기업 확인서 등 |

## 3.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

| | 구분 | 수출액 | 입증서류 |
|---|---|---|---|
| ① 수출액 감소 | ⓐ '19.1.1. ~'19.4.30. | 10,000 백만원 | ※ 수출실적증명서 등 |
| | ⓑ '20.1.1. ~'20.4.30. | 7,000 백만원 | ※ 수출실적증명서 등 |
| | ⓒ 감소금액(ⓑ-ⓐ) | 3,000 백만원 | - |
| | ⓓ 감소비율(ⓒ/ⓐ) | 30 % | - |
| | 구분 | 매출액 | 입증서류 |
| ② 매출액 감소 | ⓐ '19.1.1. ~'19.4.30. | 10,000 백만원 | ※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|
| | ⓑ '20.1.1. ~'20.4.30. | 7,000 백만원 | ※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|
| | ⓒ 감소금액(ⓑ-ⓐ) | 3,000 백만원 | - |
| | ⓓ 감소비율(ⓒ/ⓐ) | 30 % | - |

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를 신청하며, 기재내용과 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이사) (서명 또는 인)

※ 붙임서류 : 1. 중소기업 확인서 등
2. 수출실적 증명서 등(UNI-PASS 확인 가능)
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(세무대리인 확인본)

관세청장 귀하

**[붙임 2]**

#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요건 및 신청방법

## □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

○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2019년도 수입(輸入)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* 수출입기업으로서 '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'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

*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,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

▸ 2020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
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)

▸ 2020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1~3%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

※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 창출 비율

| 2019년 수입금액 | 1천만불 미만 | 1천만~5천만불 | 5천만~1억불 |
|---|---|---|---|
| 일자리창출비율* (전년대비) | 1% 이상 | 2% 이상 | 3% 이상 |

* 청년근로자[15세~29세, 군 복무기간(최대6년) 제외]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계산시 1인당 1.5명으로 산정

## □ 제출서류

①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(예시 첨부)

②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'19.1~12월)

④ 사업계획서 등 고용 유지 및 창출 계획이 포함된 서류

(예시)

#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

## 1. 기본사항

| 회사명 | (주)한국 | 대표자 | 한국인 |
|---|---|---|---|
| 소재지 |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○번지 | 업 종 | 제조/ 음료 |
| 사업자등록번호 | 123-81-45678 | 중소기업 여부 | ※ 중소기업 확인서 등<br>(일자리유지 중소기업에 해당) |
| 대표 전화번호 | 02-123-4567 | 담당자 전화번호 | 02-123-4568 |
| 사업연도 | ( 12 )월 결산법인 | 2019년도 수입금액 | 미화(49,000,000)불 |

## 2. 2020년 근로자 고용 계획

| 구 분 | | 인 원 | 기 준 |
|---|---|---|---|
| ① 2019년 상시 근로자 수 | | 98.7 명 | • '19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<br>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|
| ② 2020년 상시 근로자 수(계획) | | 106.2 명 | • '20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<br>※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|
| ③ 증가인원 수(②-①) | | 7.5 명 | • 최소 1명 이상 |
| ④ 청년근로자수 | ⓐ 2019년 | 35 명 | • '19년 12월 말 인원을 기재 |
| | ⓑ 2020년 | 37 명 | • '20년 12월 말 (예상)인원을 기재 |
| | ⓒ 증가(ⓑ-ⓐ) | 2 명 | •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, 음수는 0으로 봄 |
| ⑤ 증가비율 ([③+(ⓒ*0.5)]/①*100) | | 8.6 % | • 일자리유지 기업 : 0% 이상<br>• 일자리창출 기업 : 수입규모별 1%, 2%, 3% 이상 |

※ 상시근로자 수 계산(외국인 근로자는 제외)

| 연도 | 해당(직전)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| | | | | | | | | | | | ⑬ 합계 | ⑭ 개월수 | ⑮ 상시근로자수 (=⑬÷⑭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 | | |
| 2019년 | 98 | 98 | 98 | 98 | 98 | 98 | 97 | 97 | 100 | 102 | 100 | 100 | 1,184 | 12 | 98.7 |
| 2020년 | 100 | 102 | 102 | 110 | 110 | 110 | 110 | 110 | 105 | 105 | 105 | 105 | 1,274 | 12 | 106.2 |

## 3.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(고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) : 별도첨부

2020년도 중에 위와 같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.

2020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이사) (서명 또는 인)

※ 붙임서류 : 1. 중소기업 확인서 등
2.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'19.1~12월)
3. 사업계획서 등

관세청장 귀하

## '상시근로자 수' 란?

○ 근로기준법에 따라 **근로계약**을 **체결**한 **내국인 근로자**로 하되, **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**하는 사람은 **제외**

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

① **근로계약기간**이 **1년 미만**인 **근로자**. 다만, **근로계약**의 **연속된 갱신**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**총 기간이 1년 이상**인 **근로자**는 **상시근로자**에 **포함**

② **단시간 근로자**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). 다만,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**60시간 이상**인 **근로자***는 **상시근로자**에 **포함**

* 근로자 1명을 0.5명으로 계산

③ **임원**(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)

④ 해당 법인의 **최대주주** 또는 **최대출자자**와 **그 배우자** (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 및 그 배우자)

⑤ 위 **④에 해당**하는 **자**의 **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**

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(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)에 의하여 **근로소득세**를 **원천징수**한 **사실**이 **확인되지 아니하고**, **국민연금·건강보험료*** 등의 **납부사실**도 **확인되지 아니하는 자**

* 국민연금 **부담금** 및 **기여금**(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), **직장가입자**의 건강**보험료**(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)

⑦ 상시근로자의 **월평균급여**가 '최저임금위원회'에서 고시한 '**최저임금**(시간급)'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**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**

○ '20년 중 신규채용 **청년근로자***는 **1명을 1.5명으로 계산**

- '20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가 '19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'20년 중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봄

* **청년근로자 범위**(조특령§23⑧) : 15세이상 ~ 29세 + 군 복무기간(최대 6년)

○ 신청일 현재 **청년창업중소기업**인 경우 **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**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**고용인원 1명을 1.5명으로 계산**(청년고용에 따른 기존우대는 중복적용하지 않음)

* '12.1.1.이후 창업한(법인은 등기상 설립일, 개인은 개업일) 사업자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29세 이하(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)인 경우(법인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)

## 계산방법 예시

### ❑ 2019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

| 2019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**12월**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말 근로자 수 | 98 | 98 | 98 | 98 | 98 | 98 | 97 | 97 | 100 | 102 | 100 | **100** |
| (청년근로자 수) | (34) | (34) | (34) | (34) | (34) | (34) | (34) | (34) | (34) | (35) | (35) | (35) |

• **2019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** : **98.7명**(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)

$$\frac{98 + 98 + 98 + 98 + 98 + 98 + 97 + 97 + 100 + 102 + 100 + 100}{12} = 98.7명$$

• **2019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** : **35명** (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)

### ❑ 2020년 상시근로자 수(계획) 계산 방법

◈ 2020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

○ '20.2월 청년근로자 2명 신규채용,
'20.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(청년근로자 아님) 신규채용

○ '20.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(예상)

○ **기타 근로인원 변동 없음**

| 2020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말 근로자 수 | 100 | 102 | 102 | 110 | 110 | 110 | 110 | 110 | 105 | 105 | 105 | 105 |
| (청년근로자 수) | (35) | (37) | (37) | (37) | (37) | (37) | (37) | (37) | (37) | (37) | (37) | (37) |

• **2020년 평균 상시근로자 수** : 106.2명 (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)

$$\frac{100 + 102 + 102 + 110 + 110 + 110 + 110 + 110 + 105 + 105 + 105 + 105}{12} = 106.2명$$

• **2020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** : 37명 (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)

## ❑ 증가인원 수 : 7.5명 (106.2명-98.7명)

## ❑ 증가비율 : (8.5명 / 98.7명) × 100 = 8.6%

○ 8.5명 =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(106.2 - 98.7 = 7.5명)
+ 청년근로자 가중치 ([37-35]* × 0.5 = 1명)

* 청년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,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

**<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>**

## ❑ 증가인원 수 : 7.5명 (106.2명-98.7명)

## ❑ 증가비율 : (11.25명 / 98.7명) × 100 = 11.3%

○ 11.25명 =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(106.2 - 98.7 = 7.5명) * 1.5

## 기타 참고사항

○ 1~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**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19년 대비 2020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**

* 예시) 2019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19년(1~12월)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0년(1~12월)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

○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①·②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**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**

* 예시) 1.46명 ⇢ 1.5명

○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⑤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**소수점 이하 2자리**에서 **절사**함에 유의

* 예시) ⑤ 증가비율 1.98% ⇢ 1.9%

○ **매월말**로 **퇴직**하는 근로자는 **매월말 상시근로자 수**에 **포함**하여 계산(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)

* 예시) 3.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

## 합병·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

### ❑ 합병법인

○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

### ❑ '20.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·후 매월 말 근로자 수

| 2019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병법인 | 60 | 60 | 60 | 60 | 60 | 60 | 60 | 60 | 60 | 60 | 60 | 60 |

| 2020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병법인 | 60 | 60 | 60 | 60 | 100 | 100 | 100 | 120 | 120 | 120 | 120 | 120 |
| 피합병법인 | 40 | 40 | 40 | 40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

○ 2019년 (기준)상시근로자 수 : 60명

○ 2020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

$$\frac{60 + 60 + 60 + 60 + 60 + 60 + 60 + 80 + 80 + 80 + 80 + 80}{12} = 68.3\text{명}$$

*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

○ 증가인원 수 : 68.3명 - 60명 = 8.3명

○ 증가비율 : (8.3명 / 60명) × 100 = 13.8%

## ❑ 분할법인

○ 분할의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

## ❑ '20.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•후 매월 말 근로자 수

| 2019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분할법인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 100 |

| 2020년 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분할존속법인 (제조부문) | 100 | 100 | 100 | 100 | 60 | 60 | 60 | 80 | 80 | 80 | 80 | 80 |
| 분할신설법인 (판매부문) | - | - | - | - | 40 | 40 | 40 | 40 | 40 | 40 | 40 | 40 |

* '20.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,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(**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**)

○ 2019년 (기준)상시근로자 수 : 60명

○ 2020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

$$\frac{60 + 60 + 60 + 60 + 60 + 60 + 60 + 80 + 80 + 80 + 80 + 80}{12} = \textbf{68.3명}$$

○ 증가인원 수 : 68.3명 - 60명 = 8.3명

○ 증가비율 : (8.3명 / 60명) × 100 = 13.8%